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이 정보는 2018-0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계약의 체결

### 4.3. 계약의 이행 보증

#### 4.3.2.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 계약보증금 납부

######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가.] .

※ **단기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용역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Ⅲ-4) .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한 납부

■ 계약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찰보증금납부>,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클릭하세요.

■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반환청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4절 1. 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4절 1. 다.).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의 대체납부

■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3. 나.).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 계약보증금 면제

■ 계약보증금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③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 **확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나중에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약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4. 가. 단서).
  - ▶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4. 다.).
  -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4. 나.).
  - ▶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 **미지급액의 세입조치 제한**

-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을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1호).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 및 반환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입찰참가-입찰보증금 납부-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